

평가단위별 평가결과

(제20조 관련)

- 평가단위명 :
- 평가대상자 직종 :
- 평가기간 : 20 . . .부터 20 . . .까지

순위	등급	성명	근무부서	담당직무	평가자 원점수	비고

※ 작성요령

- 평가단위명 : 시설관리사, 보안원, 미화원, 연구원 등
- 평가대상자 직종 :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내부과제연구원, 외부과제연구원 등
- 등급은 4개 단계(상, 중, 하, 최하)로 부여하되, 등급의 배정비율은 평가 인원수별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 사용하는 구간별 배정비율을 적용한다.
- 평가자 원점수는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근무성적평가표의 종합평가 점수를 기재한다.
-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.
 - 평가대상자가 담당하는 직종의 조직내 비중, 평가대상자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,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.
 - 동일한 평가대상 직종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.

○ 확인·평가자

구분	직위	직급	성명	서명	일자
확인자					
평가자					
평가자					